



가계조사지침

1974

김세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022699

도시가계조사지침

1974

목 차

1. 일반적인 사항

- 가. 가계조사란 어떠한 것인가? 1
- 나. 조사대상은 무엇인가? 1
- 다. 조사사항은 무엇인가? 3
- 라. 조사는 언제 하는가? 5
- 마.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5

2. 조사표류 가입요령

- 가. 식료품비 조사는 어떻게 하며 조사표는 어떻게 작성하는
가? 9
- 나. 보조조사는 어떤 것이며 조사표의 작성은 어떻게 하나? 11
- 다. 가계조사 집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22

3. 김장조사

- 가. 조사방법 29
- 나. 조사표 가입요령 30

부 록

- 1. 가계조사 수지항목 분류 35
- 2. 직업분류표 61

1. 일반적인 사항

1. 일반적인 사항

가. 가계조사란 어떠한 것인가?

가계조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35개 도시중 성남시, 안양시 및 부천시를 제외한 32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모집 단위로 하여 이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 (17개 도시에서 약 1,800가구를 추출) 일정한 기간동안 이들 표본가구에서 얻은 수입이 어떠한 곳에 얼마나 지출되었나 하는 것을 파악하므로써 그 지출방식이 소득, 가구인원 및 지역별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가계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실태를 명백히 하고 아울러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즉

첫째 ;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자료

둘째 ; 소비수준 및 표준생계비에 관한 자료

셋째 ; 국민소득의 추계자료

넷째 ; 임금기준의 결정 및 영양분석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조사대상은 무엇인가?

1) 조사단위

가계조사의 조사단위는 원칙적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조사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한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격가구

가) 농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서

- 1) 논, 밭등의 총평수 300평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 2) 소, 말 1마리(운반용 제외) 돼지, 양 3마리, 토끼 40마리 닭, 오리 30수 또는 양봉5통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3) 누에알 128이상을 치는 가구
- 4) 특수작물 100평이상을 경작하는 가구를 농가라 한다.

나) 여업가구

어업에 종사하므로써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 단, 민물고기를 기르므로 유지하는 가구도 이에 포함된다.

다) 단독가구

1인이 가계를 독립하여 유지하는 가구

라)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 (1) 음식점, 여관, 하숙업등을 경영하여 영업수지와 가계수지를 분리하기 곤란한 가구
- (2) 가족의 일부 또는 전원이 부정기적으로 출타하여 일정한 가계를 이루지 못하는 가구
- (3) 동굴, 천막등에 거주하는 가구

마) 월간 소득액이 20만원 이상되는 고소득가구

바) 외국인 가구

3.) 가구의 정의

본조사에서 가구라함은 거주와 가계를 같이 하는 경제적 가족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한사람이라도 별도로 점유하고 있고 독립적인 가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구로 한다.

그리고 함께 기식(가계를 위하여 고용한)하는 식모, 찬모등은 가구원으로 간주하나 종업상의 점원, 전속인등의 고용원은

가구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조사대상가구의 구분

조사대상가구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이외의 가구로 크게 나눈다.

- (1) 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기타 공사업의 단체(학교, 병원 등) 및 회사 등에 고용되어 정신택 또는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서 봉급 또는 노임을 받음으로써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 (2) 근로자 이외의 가구는 위의 근로자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말한다. 여기서 가구수라 함은 호적상의 가구주와는 관계 없이 가족중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으로서 사실상 가계의 책임자를 말하며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그 가구의 직업을 분류한다. 2개월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을 가구주의 직업으로 한다.

나. 조사사항은 무엇인가?

본조사에서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가) 수입

(1) 소득

(가) 근로소득

(나) 기타소득

(2) 기타수입 (저축에 관한 사항)

(가) 자산의 감소

(나) 부채의 증가

(3) 전기이월금

나) 지 출

(1) 소비지출

- (가) 식료품비
- (나) 주거비
- (다) 광열비
- (라) 의류비
- (마) 잡 비

(2) 비소비지출

- (가) 조세 및 공과금
- (나) 저불이자
- (다) 기 타

(3) 기타지출 (저축에 관한 사항)

- (가) 자산의 증가
- (나) 부채의 감소

(4) 지달현금잔고

- 2) 가계의 저축에 관한 사항
- 3)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 4) 가구구성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 5) 점세에 관한 사항

※ 조사가구들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이외의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근로자 이외의 가구
에 대해서는 지출만을 조사한다. 가계수지에 관한 조사사
항은 I, L, O의 품목분류방법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의 실
정에 맞도록 분류하였다.

(〈부록 1〉 가계조사 수지항목 분류참조)

라. 조사는 언제하는가? /

이 조사는 분기별로 식료품비에 대해서는 가계부 기장방식을 식료품비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면접조사 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조사한다.

- 1) 식료품비에 대한 조사는 매월 초하루부터 말일까지 지정된 표본가구에 기장 의뢰한다.
- 2) 식료품비 이외의 품목에 대한 조사는 매월 11일, 21일 그리고 다음달 1일에 전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한다.

마.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32개도시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약 1,800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가구에 대하여는 소득과 지출을, 근로자 이외의 가구에 대하여는 지출만을 품목별로 조사한다. 이 조사중 식료품비에 한하여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조사한 뒤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하여 조사가구로 하여금 직접 기장토록 한다.

그러나 조사원은 이 기간중에 수시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료품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된 기일에 조사원이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한다.

2. 조사표류 기입요령

2.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식료품비조사는 어떻게 하며 조사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3

수시로 구입하는 식료품을 1개월에 한번씩 조사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개월간을 조사기간으로 하되 각 조사구별로 총가구의 1/3씩을 월별로 배정하여 피 조사가구로 하여금 당해 조사월에 식료품비의 지출을 기장토록 한다. (조사가구의 월별배정은 중앙에서 결정하여 이를 각 조사원에게 지시한다.)

조사원은 식료품비 조사표를 해당 표본조사 가구에 조사개시 전에 배부하여 기입 의뢰하고 그 기간중에 적어도 3회이상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기입여부를 확인한다.

기입이 완료되면 조사가구에서 조사표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된 점을 보충 수정하고 이를 회수한 다음 소정의 집계를 한다.

1) 식료품비 조사표의 기입지도

가) 조사표는 반드시 조사개시전에 조사가구에 배부하여 기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조사원은 조사표를 배부하기 전에 표지에 「기입기간」과 「조사기」, 「조사구」, 「표본가구번호」 및 「가구구분」을 기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사기」란의 기입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수에 당해 월표시 숫자를 붙여서 기입한다. 즉 1월부터 9월까지 숫자는 01, 02 ... 09를,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숫자를 붙여서 기입한다.

예를들면 1973년 1월분 식료품비 조사라면 7301로, 10월분 조사라면 7310으로 각각 표시한다.

다) 조사표에는 조사가구의 가구주 성명이나 또는 다른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라) 조사표 배부시에는 기입기간을 조사가구에 알리고 기입요령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한다.

마) 식료품비 조사표라 하여 반드시 식료품비만을 기장토록 할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가계비 지출 내용을 기장하도록 권장하고 보조조사시에는 기입누락된 내용만을 보충조사 하는 것이 좋다.

바) 기입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기입을 지도하여야 한다.

사) 주요품목 소비 및 재고량 조사에 있어서「조사개시전 재고량은 조사표 배부시에, 나머지는 조사표 회수시에 기입한다.

2) 조사표의 기입내용 검토 및 회수

지정된 조사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그 다음날에 조사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의 회수가 늦어지면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억의 소멸로 기입 미비사항에 대한 보충조사가 어렵게 되므로 조사가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나) 조사원은 조사표를 회수할 때 조사가구에서 기입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내용검토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기입기간의 상이여부와 일자의 기입여부
- (2) 품목표시의 명확성
- (3) 자가생산물의 평가
- (4) 수량 및 단위의 정확성
- (5) 영업상 또는 사무실에서 쓰기 위해 구입한 품목의 포함 여부

※ 만약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확인하여 수정 기입 한다.

3) 식료품비 집계표의 작성

회수된 조사표는 다음의 요령으로 집계한다.

(가) 식료품비 조사표의 집계표를 작성할때는 2매의 집계표중 1부 (조사표에 그대로 붙여 둘 원본)에는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을 빠짐없이 합산하여 3배하지 아니한 그대로 각 품목별로 조사표의 집계금액을 집계표의 금액란에 기입한다.

만약 자가생산물 지출이나 현물지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집계표 해당품목의 비고란에 “자320 또는 현 250”이라 기입한다.

그러나 각 조사원이 보관할 부분의 집계표(가계조사집계표 작성에 필요한 것)에는 일반식료품비와 특별식료품비(명절, 관혼상제 또는 김장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식료품비)를 구분하여 기입해 둔다.

(나) 당해 조사월에 조사하지 않는 2/3에 해당되는 조사가구에 있어서 만약 명절, 관혼상제 등을 위한 특별식료품비의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조사시 이를 보조조사표에 조사기입하였다가 가계조사 집계표 작성시 참고로 한다.

4) 식료품비 조사표의 제출

매월 말일 식료품비 조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회수하여 집계를 마친 후 집계표 1매를 들어 보관하고 조사표는 소정기일(다음달 15일) 내에 담당지도원 경유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조사는 어떤 것이며 조사표의 작성은 어떻게 하나?

보조조사는 가계를 위한 수입, 지출항목중에서 주거, 광열피복,

장비의 소비지출과 지불이자 및 기타의 비소비지출을 월 3회(보조조사기간 < 1월~10일, 11월~20일, 21일~30일 >의 다음날인 11일, 21일, 다음달 1일)에 걸쳐 조사표의 조사항목 일람표에 의하여 조사하고 소득, 기타수지, 조세 및 공과금은 월 1회 적합한 날을 택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식료품비를 조사하지 않는 달에 있었던 명절, 관혼상제 등을 위한 특별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도 보조조사에서 조사하여 한다.

단, 김장비의 경우는 김장조사표에 조사 기입하였다가 가계조사집계표의 김장품목집계표에 이기한다.

1) 보조조사에 있어서의 일반적 유의사항

가) 보조조사는 가계수지 파악을 위한 거의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누락, 착오, 미비, 불성실등 조사상 잘못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보조조사표는 가구당 2매(1. 식료품비의 지출, 2. 소득, 3. 비소비지출, 4. 기타수지(저축상황) 및 1 페이지의 여백)를 가지고 1개월에 3회 지정된 기일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 월 3회, 분기 9회의 보조조사에서 얻어진 전조사품목의 구입량 및 금액을 각 품목별로 3개월분을 집계하여 당해 분기 가계조사집계표의 각 해당 동종품목에 이기하고 미비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사 가구를 재방문 하여 이를 확인 보충토록 한다.

라) 월 1회의 소득과 조세 및 공과금 조사에 있어서 「공토소득」란의 가구주 및 기타 가구원의 소득은 주택부담의 총액(즉 원천과세와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조사기입 하여야 하며 이 금액중에서 조세와 공과금 등의 공제액을 별도 조사하여 비소비지출의 「조세 및 공과금」란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공무원인 경우 공제액중 국민저축 및 기여금등은 「4. 기타수지

(저축상황)]란의 저금란과 기여금란에 각각 포함시켜야 한다.

마) 조사기입된 보조조사표는 편철하여 당해 분기 가계조사집계표 제출시에 동봉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입요령

가) 난외사항

(1) 표본가구 번호

지정된 표본가구번호를 기입한다.

나) 난내사항

(1) 식료품비의 지출

(가) 조사월일 : 지정된 보조조사 방문 기일을 기입한다.

(나) 부호 및 품명 : 조사표 제일 첫장의 조사항목 일람표에 나열된 소비지출 항목에서 보조조사기간에 실제로 구입한 물건이나 자기집에서 생산하여 소비한 물건 또는 가구가 아닌 직장이나 사회단체에서 현물로 받아 자기집에서 소비한 물건의 품명을 조사 기입하고 해당 부호를 기입한다.

(다) 수량 및 금액 : 수량은 가능한 한 미터법에 의한 표준단위로 표시하되 경우에 따라 재래식 단위를 표시하는 것도 무방하나 금액의 기입은 누락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합 계 : 현금 및 외상란의 금액과 자가생산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마) 현금 및 외상 : 현금이나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의 금액을 기입한다. 그중 자기집에서 소비하지 않고 타가구에게 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의 금액을 비교란에 기입한다.

(바) 자 가 생 산 : 자기집에서 직접 생산한 물건이라든지 직장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현물로 받은 것을 자기집에서 소비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입한다.

(사) 비 고 : 원물지출의 금액을 기입한다.

이때 이 금액은 합계란과 현금 및 외상란의 금액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아) 기타유의사항

다음에 열거한 조사항목은 조사기술상 특히 어려운 항목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주 거 비

㉠방 세

매월 마지막 보조 조사시 실제로 그달에 지불한 월세액을 조사 기입하였다가 분기말 가계조사 집계표 작성시 3개월분을 합산하여 이기한다.

전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지불하는 집세」의 경우에는 매월 지불하는 집세, 「보증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집세」의 경우에는 매월 공제하는 금액을 그리고 「보증금 없이 매월 지불하는 집세를 조사하여 기입한다.

②자가평가액

자가평가액(월세 평가액)은 매분기에 한번씩 이를 조사하여 보조조사표에 기입하여 두었다가 가계조사집계표 작성시 이를 3배하여 기입한다.

※자가평가액이라함은 자가, 전세 및 무상주택(관공서 또는 회사에서 공여하는 경우)의 경우에 간접 자가의 지출 월세를 참작하여 그 월세를 평가하는 것이며(사용하는 방만을 평가하여야 함) 총 평가액중에서 재산세, 화재보험료의 지불 및 가옥수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옥의 일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나 이밖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외시켜 가계를 위하여 가구가 사용하는 방만을 평가한다.

② 피 복 비

㉞기타피복

장신구중 고가의 보석반지등의 순수한 축제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기타 지출의 자산의 증가중「기타」란에 조사 기입한다.

③ 잡 비

㉞교 육 비

국내 유학중인 자녀에 대한 송금은 교육비와 하숙비로 나눈다. 이것중 교육비는 가급적이면 수수료, 교과서대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하숙비는 교육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식비는 식료품비중 의식의 기타한식란에, 하숙방 사용료는 주거비의 방세란에 각각 추계하여 포함시키고 교부비등은 피복비에, 이밖에 교통비, 우편료 등의 지출도 각각 해당 항목별로 분류하여 추계 한다.

㉞ 기타 잡비중의 증여금

교회, 사찰, 절인등에 기부한 기부금과 같이 타가구에 이전되지 않는 금액을 증여금으로 하고 생활보조를 위하여 타가구에 이전 지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전 지출한 금액만큼 지출가구측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이를 수입가구측의 소득액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타가구에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 지출되는 현물은 지출가구측의 소비지출중 각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포함시킨다.

또한 식료품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식료품비 조사시에 조사기입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열거되지 않은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부록의「가계조사 수지항목분류」를 참조하여 잘못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소 득

소득조사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은 전가구에 대하여 조사기입하였다가 집계조사집계표 작성시 이를「가구의 소득(3개월)」란에 이기한다.

가계수입에 관한 조사는 피조사가구에서 응답하기를 가장 꺼려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조사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정확한 수입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하기 곤란한 항목과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수입항목의 누락으로 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점을 유의하여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근로소득(가구의 소득+기타가구의 소득)

이는 원천과세, 각종 회비 및 물품대금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으로 파악하여「가구의 소득」과 가구주 이외의「기타가구의 소득」으로 구분 파악하되 후자는 누락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치료, 이발 또는 통근차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시점의 깃가로 평가 환산하여 모두 포함시키며 동시에 소비 지출된 것으로 본다.

(나)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단, 자가가평가액은 여기에 합산하지 않는다.

① 이자 및 배당금

대여금, 예금, 저금, 권리금, 물품대여등에 의한 이자와 국, 공, 사채등의 증권투자에 의한 이익 배당금을 기입한다.

② 방세수입

남에게 집을 세준 경우 ①보증금 없이 매월 받아 들

들어는 집세 ②보증금을 받고 매월 받아 들어는 집세 ③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집세는 이 항목에 포함시킨다.

다만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은 기타 수입의 「빌린 돈」란에 포함시키고 반대로 조사기간중 전세금 및 보증금을 내어준 경우는 기타 지출의 「빌린 돈 갚은금액」란에 기입한다.

③ 부업수입

가주주 및 가주원이 부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을 기입한다.

④ 수증 및 보조

교제, 축의, 조의, 연말연시의 수증금등과 생활보조를 위하여 부모, 친지등으로 부터 받은 보조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수증 또는 보조였 의한 현물수입은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단, 직장이나 사회단체등에서 받은 현물수입은 이를 소득으로 잡는다.

⑤ 기 타

상기 이외의 소득으로서 예를들면 헌신문을 판 돈, 경품권, 경마, 오락등의 상금 또는 습득금, 기타 음성수입(예, 출장비 중에서 잔여금)은 이에 해당된다.

⑥ 자가생산물 평가액

자기집 300평 미만의 전답, 하천, 바다, 산야등에서 채소, 닭, 계란, 어개물, 고사리, 도라지등을 재배, 생산, 채취, 수렴하여 얻은 수확물을 자가에서 소비할 경우에 시장가격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조사표 비교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자가소비가 아니고 영리를 위한 판매의 경우에는 부업수입으로 한다.

콩을 구입하여 두부, 콩나물, 간장, 된장등을 만들거나 무연탄을 구입하여 19공탄을 만든것 등은 자가생산인 아니다.

(3) 비소비지출

(가) 조세 및 공과금 : 근로소득세, 주민세, 가옥세, 상속세 등의 조세와 야경비, 저십자회비, 오물 및 분뇨수거비 (동회에 납부하는 오물세 제외) 등이 이난에 해당 된다. 단, 사업상의 이유로 지출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여기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봉급계산표를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 불 이 자 : 가제를 위하여 빌린돈에 대한 이자를 조사기입한다.

여기서도 사업상의 이유로 빌린돈의 이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다) 기 타 : 벌금, 과료, 변상금, 도난, 분실금품을 조사기입 한다.

(4) 기타수지 (저축사항)

(가) 기타지출

① 자산의 증가

㉠ 저금불입

은행저금과 우체국 저금으로 분리하여 조사기입하고 저금불입란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

은 행

은행저금에는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및 금전신탁이 포함된다.

우 체 국

우편저금의 종류에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국민저축 조합예금 및 대체예금등의 4종이 있다.

㉡ 보험불입

민영생명보험과 국민생명보험으로 나누어 각각 생명보험과 기타란에 분류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

단, 여기서는 비저축성보험(손해보험)은 취급되서는 안된다.

※ 생명보험란이 저축성 보험으로서 사망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 퇴직보험, 등이 있으며 일반보험회사에서 직접 취급하는 민영생명보험과 정부(우체국)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불을 계약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상으로 정부(우체국)에 보험료를 불입하는 국민생명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㉔ 유가증권 구입

주식 및 **채권**(공채, 지방채, 금융채권 및 사채)으로 나누어 조사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

㉕ 제불입

제에 들어있는 경우 제를 타기전에 매월 붓는 것은 이난에 조사기입하고, 제를 탕후 붓는 것은 빌린 돈 같은금액란에 기입한다.

㉖ 부동산 구입

토지와 가옥을 매입한 금액만 기입한다. 부동산 구입액에 부동산 등기료와 취득세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이 난에서 주의할 것은 주택의 세부적인 수리가 아닌 가옥의 원형을 변경한 대규모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는 이에 소비된 금액을 이 난에 기입한다.

㉗ 기여금 불입

직장에서 봉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할 때 찾는 것으로 조사기간중 기여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조사 기입한다.

㉘ 빌려준 돈

개인 및 사설단체에 빌려준 돈을 조사 기입한다. 돈 전세를 얻었을 경우 전세금으로 준 돈도 이난에 해당된다.

㉔ 기 타

토지, 가옥 이외의 재산을 매입한 금액이 이난에 해당된다.

즉 장신구류중 고가의 보석을 순수한 축재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과 계속적인 사업(비법인)과는 관계 없이 일시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기계나 물품을 구입한 것이 이에 포함되고 적장공제금 지출도 이 난에서 조사한다.

㉕ 부채의 감소

㉕ 빌린 돈 갚은 금액

금융기관, 개인 및 사설단체에서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가계용 위하여 빌린 돈을 갚았을 때 그 원금만을 조사 기입한다. 이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원금과는 별도로 비소비지출의「지불이자」란에 기입한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받은 금액을 셋집이 이사가기 때문에 돌려 주었을 때나, 지물 탄후에 매월붓는 깃돈은 이난에 기입한다.

㉖ 월부 및 의상값 갚은 금액

조사기간(3개월)중에 월부 및 의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기간중에 모두 갚았을 경우에는 이를 기타수지(저축상환)에서 파악치 않고 현금구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전에 구입한 월부 및 의상값이 이월되어 그 잔여액을 조사기간중 갚았을 때만 이난에 조사기입 한다.

㉗ 직할현금 잔고

조사기말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조사한다. 단, 가계조사질제표 작성시에는 이를 3배한 금액을 기입한다.

(나) 기타수입

① 자산의 감

㉑ 저금인출

「저금에서 찾은 금액」을 말하며 **은행**, **우체국** 등에 예금한 금액중에서 조사기간 동안에 찾아 쓴 금액을 각각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저금인출란에 기입한다.

㉒ 보험인출

조사기간중 보험을 탔을 경우 민영생명과 국민생명으로 나누어 각각 **생명보험**, **기타**란에 조사 기입한다.

㉓ 유가증권 매각

유가증권을 판 금액을 **주식**과, **채권**으로 분류하여 조사 기입한다.

㉔ 계 인출

계를 탔을 경우 꺾돈종액중 자기가 불입한 금액만을 이난에 조사기입하고 나머지금액은 "빌린돈"란에 기입한다.

㉕ 부동산 매각

토지와 가옥을 판 금액을 조사 기입한다.

㉖ 기여금 받은 금액

조사기간중 퇴직하여 퇴직금을 탔을 경우 이를 조사 기입한다.

㉗ 빌려준 돈 받은 금액

개인 및 사설단체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았을 때 그 원금만을 이난에 조사 기입하고 이자는 소득란의 수입이자 및 배당금란에 기입한다. 또 전세를 들었다가 이사가면서 전세금을 찾았을 때에도 이난에 해당된다.

㉘ 기 타

토지, 가옥을 제외한 기타 재산을 판 금액으로 순수한

측재목적이나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저장하였던 보석, 양곡, 기자재 등의 매각금액을 조사하며 직장공제금등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 난에서 파악한다.

② 부채의 증가

㉠ 빌린 돈

조사기간중 금융기관이나 개인 또는 사설단체에서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렸을 때 그 금액을 조사 기입한다.

그리고 세를 주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나 켄돈을 탔을 경우 실제 부은 켄돈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은 이난에 기입한다.

㉡ 월부 및 외상값

조사기간중에 월부 및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기간중에 완불치 못했을 때 그 금액중 갚은 금액은 기입치 않고 기간중 갚지 못한 잔여액만을 이 난에 조사 기입한다.

그러나 조사기간 이전에 월부 및 외상으로 구입하고 조사기간중에 그 일부를 갚았을 때에는 그 갚은 금액은 부채의 감소중「월부 및 외상값 갚은 금액」밖에 조사 기입해야 하나 갚지 못한 잔여액은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

③ 전기 이월금

전 조사기말에서 다음 조사기로 넘어온 금액을 조사 기입한다. 단, 조사가 완료되어 가계조사집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를 3배한 금액을 기입한다.

다. 가계조사집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상에서와 같이 식료품비 조사와 보조조사가 완료되면 가구표, 보조조사표 및 식료품비 집계표(조사가구별 각 1매)를 취합하여 가

제조사 집계표를 작성한다.

만약 집계표 작성시 미비점이나 착오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즉시(다음 분기초 1일부터 7일사이) 조사가구를 재 방문하여 확인 정정한다.

1) 가계조사 집계표의 기입요령

가) 표전 각란의 기입

(1) 조사기

이년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두자리 수에다가 분기표시 즉 1/4 분기는 1, 2/4 분기는 2, 3/4 분기는 3, 4/4 분기는 4 를 붙여서 기입한다.

예를들면 1973 1/4 분기에 대한 조사이면 731로 표시한다.

(2) 조사구 번호

지정된 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3) 표본가구 번호

지정된 가계조사 표본가구 번호를 기입한다.

(4) 가구구분

근로자 가구는「근」, 근로자의 가구는「외」라 기입하고 가구의 구분은 부록의 가계조사 직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잘못 기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가구원수

조사기간중 가계를 같이한 월평균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6) 취업 인원수

조사기간중 월평균 취업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7) 가구의 연령

만 연령을 기입한다.

(8) 소득계층 및 소비지출계층란은 중앙에서 기입할 것이므로 조사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9) 14세이상 취업인수란에는 반드시 가구주를 제외한 취업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나) 가구실태 (집계표 1 페이지)의 기입

(1) 가구에 관한 사항

(가) 성별 : 남녀의 구별을 해당란에 ○표시 한다.

(나) 연령 : 만 연령을 기입한다.

(다) 근무처 또는 사업체명 (산업) 및 직업 :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한다.

(라) 가구주의 소득 (3 개월) : 보조조사표에 조사 기입된 가구주의 소득을 3개월분 합산하여 기입한다.

(2) 연령 및 성별 가구원수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를 연령 계급별로 해당란에 인원수를 기입한다.

(3) 주거에 관한 사항

7개 조사 항목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된 항목에는 월세평가액, 또는 월세액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구원이 모두 직업이 없는 가구는 생계유지 방법을 상세히 설명 기입하여야 한다.

다) 가계수지 집계표의 기입

식료품비 조사와 보조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요령에 의하여 기입한다.

(1) 소득 및 기타수지 항목 (집계표 2 페이지)의 기입

(가) 보조조사시 분기 3회 (월 1회) 에 걸쳐 조사 기입된 내용을 합산하여 3개월분 결과를 항목별로 기입한다.

(나) 소득 총액에는 자가평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다) 총수입(소득+기타수입)과 총지출(비용지출+기타지출)의 차이 즉 통계상의 차이가 클때에는 조사가 잘못된 것이니 조사기구를 다시 방문하여 이를 재조사 확인한다.

(2) 지출 집계표(3페이지 부터 17페이지 까지)의 기입

(가) 수량은 표시된 단위에 따라 환산한 후 기입한다.

(나) 금액란은 현금 및 의상과 자가생산물 지출액을 합제한 금액을 기입해야 하며 반드시 표시 단위에 맞춰서 기입한다.

(다) 항목별 비교란에는 자가생산물 지출액과 현물 지출액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라) 비용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제한 금액을 기입한다.

(마)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와 식료품비 이외의 항목(품목)에 대한 지출을 합제하여 기입한다.

① 식료품비

3개월간 조사하여 보관하고 있는 각 가구별 1개월분의 식료품비 집계표를 참조하여 기입하되, 합산 기입하는 방법은 월별 식료품비 조사표의 집계표중 일반식료품비의 금액을 3배한 것에 월별 식료품비 조사에 의한 특별식료품비 금액과 식료품비 조사를 하지 않는 달(月)의 보조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특별 식료품비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각 항목별로 기입한다.

② 식료품비의 지출

월 3회 분기 9회에 걸쳐 보조조사시 기입된 식료품비 이외의 항목(품목)에 대한 지출금액을 항목(품목)별로 합산하여 3개월분 금액을 기입한다.

(바) 자가생산물지출총액은 각 항목(품목)별 비고란에 기입된 자가생산물 지출액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사) 결혼, 회갑 및 장례등에 지출된 금품은 보조조사에서 이미 조사기입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가계조사집계표에 이기한 후 각 항목(품목)별로 부호를 기입한다.

※ 조사가 끝난 후 조사표를 제출할 때에는 조사표 제출 명세서 1부를 작성 첨부한다.

3. 김 장 조 사

3. 김 장 조 사

가. 조사방법

1) 김장조사표를 조사가구에 빠짐없이 배부하여 3개월간(10월~12월)을 간직토록 하고 김장용으로 구입한 품목을 구입시점에 관계 없이 모두 김장조사표에 기입토록 의뢰한다.

김장이 끝난 후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기장 의뢰했던 김장조사표를 회수하고 구입품목의 단가, 수량, 구입금액, 구입일자 등을 재확인하여 가계조사집계표의 김장비집계표에 이기한다.

2) 김장용품중 저장 가능한 조미료류, 육, 어개류(새우젓, 멸치젓) 등을 조사기간전(10월 1일 이전)에 구입하였을 때는 김장조사표에는 조사되나 4/4 분기 식료품비 조사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특히 유의하여 4/4 분기 식료품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기간중(10월 1일~12월 31일)에 월동김장용으로 구입한 김장비 금액은 가계조사집계표의 김장비집계표에 기입되어야 하며 또한 가계조사집계표의 식료품비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계조사집계표의 식료품비란을 기입할 때에는 월별 식료품비중 일반식료품비(김장비 제외)를 3배한 후 다시 김장비금액을 이에 합산하여 총금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4) 4/4 분기 식료품비는 일반식료품비에 김장비가 추가된 것이므로 김장비 지출만큼 식료품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식료품비가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적게 파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며 또한 4/4 분기는 각종 상여금을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빠짐없이 조사토록 할 것이며 소득과 비용지출을 비교하여 가계수지 균형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조사표 기입요령

1) 품목마다 두가지 단위로 표시하였으나 이중 하나를 사용하여 구입량을 계산하고 조사표상에 명시되지 않은 단위를 사용하는 지역은 반드시 조사표상의 단위로 환산한다.

그런데 특히 ◎표시된 품목의 구입수량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기입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한다.

2) 각 품목의 구입수량은「현금구입(의상포함)」,「자가생산」및「현물수증」의 합계량을 기입한다.

3) 「단가」: 구입량 단위에 의한 단가를 기입한다.

4) 「구입금액」: 시장에서 현금 또는 의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5) 「자가생산」「현물수증」: 김장 해당 품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기 집에서 생산하여 보충하였을 경우와 타 가구로부터 현물로 얻었을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서 구입한 것과 동일하게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입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간중 자가생산한 것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소득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식료품비 지출에는 포함시키며 단,

현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식료품비조사표에 기입되어서는 안된다.

6) 「구입날자」: 각 김장품목의 실제 구입한 날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7) 「김장한 날자」: 김장을 실제로 한 날자를 기입한다.

부 록

1. 가계조사 수지 항목 분류
2. 직업 분류표

<부록 1>

가계수지항목의 분류요지

- 가. 이 가계수지항목의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연합통계기구에
서 추천하는 분류방법을 그 기저로 삼아 품목별 분류에 따라
또 우리나라 국민생활실태에 적합하게끔 분류하였다.
- 나. 이 가계수지항목의 분류는 현금 및 현물의 수입지출에 공통적
으로 사용된다.
- 다. 가계의 지출을 구입한 품목에 따라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및 기타 지출로 분류하였
다.
- 라. 지출항목은 시세의 변화, 수입증감에 따르는 일반 소비성향 등
지출 Weight의 증감을 참작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 마. 수지항목 분류중 생활수준 측정을 위하여 집이 자기 소유일 경우
에는 이를 인접차가의 방세를 참작하여 수입 자가평가액 항목을
설정하고 동시에 지출자가평가액 항목도 설정하였다.

가계조사수지 항목 분류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수 입	소득 및 소득이외의 수입 지출되는 현금의 모든 원천은 물론 부채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에 의한 현금 등 조사기간에 수입되는 전수입
3000	소 득	근로자가 근무처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이밖에 주로 재산소득,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과 같은 실질적인 소득
3100	근 로 소 득	가구주 및 가구원의 근무처에서 근무에 의하여 받는 일체의 수입 즉 봉급, 노임, 수당, 상여금, 가불금 등을 포함하여 세금 각종 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3110	가 구 주 소 득	가구주가 근로에 의하여 받는 일체의 수입
3120	기 타 가 구 원 소 득	가구주를 제외한 주부, 자녀, 기타가구원이 근로에 의하여 받는 일체의 수입
3200	기 타 소 득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이자 및 배당금수입, 집세 및 땅세, 구제보조로 받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은 현금, 집에서 생산한 물품, 부업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일체의 경상소득
3210	이자및배당금	대여금, 예금, 저금, 권리금, 물품대여 등에 의한 이자 및 국·공·사채 등의 증권과 신탁투자에 의한 배당금
3220	방 세 수 입	타인에게 대여한 가옥의 임대료
3230	부 업 수 입	가구주 및 가구원이 부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수입(연초소매, 원고료, 편물, 구멍가게, 샴바느질 등의 수입)
3240	수 증 및 보 조	교제, 축의, 조의 등에 의하여 받은 현금 및 생활보조로 받은 보조금(현물수입은 일체 소득으로 간주치 않음)
3250	기 타	상기 이외의 기타소득으로서 헌신문 판매액, 상품권을 받았을때, 복권, 경품권, 경마 기타 오락경기 등에 의한 상금, 습득금, 음성수입(출장비중 잔여금)등 이밖의 경상수입 일체와 종전의 자가생산 물평가액도 이에 포함된다.
3300	자 가 평 가 액	자가, 전세 및 무상주택의 경우 이를간접차가의 지불월세를 참작하여 그 월세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p>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평가액중에서 재산세, 화재보험료의 지급 및 가옥수리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옥의 일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나 사무실,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외시켜 가계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평가한다.</p>
2000	기 타 수 입	<p>가구의 경제적인 재산상태에는 실질상의 증가없이 다만 재산의 형태가 변화되므로써 이루어지는 수입</p>
2100	자 산 의 감 소	<p>재산 및 채권(유가증권)을 매각 또는 처리함으로써 이를 현금의 형태로 전형하였을 경우</p>
2110	저 금 인 출	<p>「저금에서 찾은 금액」을 말하며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예금한 금액 중에서 조사기간동안에 찾아 쓴 금액을 각각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저금인출란에 기입한다.</p>
2111	은 행	
2112	우 체 국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2120	보 험 인 출	조사기간 중 보험을 댔을 경우 민영생 명과 국민생명으로 나누어 각각 「생명 보험」, 「기타」란에 조사 기입한다.
2121	생 명 보 험	민영생명보험 (일반 보험회사에서 직접취 급) 을 기입한다.
2122	기 타	국민생명보험 (우체국 등에서 취급) 을 기 입한다.
2130	유가증권매자	유가증권을 판 금액을 주식과 채권으로 분류하여 조사 기입한다.
2131	주 식	
2132	채 권	
2140	계 인 출	계를 댔을 경우 꺾은총액중 자기가 불 입한 금액만을 조사기입하고 나머지 금 액은 "빌린돈"란에 기입한다.
2150	부 동 산 매 자	토지와 가옥을 판 금액만 조사한다.
2160	기 여금 받은 금 액	퇴직을 하였을때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 이다.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2170	빌 려 준 돈 받 은 금 액	개인 및 사설단체에 빌려준 돈 중에서 받은 금액을 기입하고 이자는 소득란의 이자 및 배당금란에 기입한다.
2180	기 타	토지·가옥을 제외한 기타 재산을 판 금액으로 순수한 축재 목적이나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 저장하였던 보석·양곡·기자재 등의 매각 금액을 조사하며 향우회비라든가 공제금을 받았을 경우도 이 난에 서 파악한다. 또한 사내 예금을 탄 금액도 포함한다.
2200	부채의 증가	
2210	빌 린 돈	조사기간중 금융기관이나 개인 또는 사설단체에서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렸을때 그 금액을 조사 기입한다. 그리고 세를 주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때나, 깃돈을 맞을 경우 실제 부은 깃돈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이 난에 기입한다.
2220	월부및의상값	조사기간중에 월부 및 의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조사기간 말까지 완불하지 못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p>한 나머지 금액을 기입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조사기간중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의 수량과 금액은 반드시 소비 지출중 해당항목에 기입되어야 한다.</p>
2300	전 기 이 월 금	조사기 전의 가계에 남아 있던 현금 잔고
	지 출	
1000	기 타 지 출	
1100	차 산 의 증 가	
1110	저 금 불 입	은행저금과 우체국저금으로 분리하여 조사기입하고 저금불입란에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
1111	은 행	
1112	우 체 국	
1120	보 험 불 입	민영생명보험과 국민생명보험으로 나누어 각각 생명보험과 기타란에 분류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21	생 명 보 험	
1122	기 타	
1130	유 가 증 권 구 입	주식 및 채권(공채, 지방채, 금융채권 및 사채)으로 나누어 조사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입한다.
1131	주 식	
1132	채 권	
1140	계 불 입	계를 타기전 매월 낸 갯돈은 이난에 조사 기입하고, 계를 탄후 붓는 갯돈은 빌린돈 갯은 금액란에 기입한다.
1150	부 동 산 구 입	토지와 가옥을 산 금액만 기입한다. 부동산 매입액에 부동산등기료와 취득세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주택의 세부적인 수리가 아닌 가옥의 원형을 변경하는 대규모의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에는 이에 소비된 금액을 기입한다.
1160	기 여 금 불 입	직장에서 봉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할때 찾는것으로 조사기간중 기여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조사기입한다.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70	빌 려 준 돈	개인 및 사할단체에 빌려준돈을 조사기 입한다. 또 전세를 얻었을 경우 전세 금으로 준 돈도 이난에 해당된다.
1180	기 타	토지 <가< 이의외 재산을 산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즉, 장신구류중 고가의 보석을 순수한 축재의 목적으로 구입한것과 지속적인 사업(비법인)과는 관계없이 일시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기계나 물품을 구입한 것이 이에 포함된다.
1200	부 채 의 감 소	
1210	빌린 돈 갚은 금액	금융기관, 개인 및 사할단체에서 사업상 의 이유가 아닌 가계를 위해 빌린돈을 갚았을때 그 원금만을 조사 기입한다. 전세금 받은 금액을 셋집이 이사갈때 들려주었을 때나, 계를 탄후 매월 붓는 계돈은 이난에 기입한다.
1220	월 부 및 의 상 값 갚은 금액	조사기간중에 월부 및 의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기간중에 모두 갚았을 경 우는 적축상황의 기타 수지에서는 파악 치 않고 현금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야 하며 조사기간전에 월부 및 의상으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300	기 말 현금 잔 고	로 넘어온 잔여액을 조사기간중 갚았을 때에만 이난에 조사기입한다.
3800	소 비 지 출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함에 필요한 재 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한 지출
3900	식 료 품 비	
4000	곡 물	
4011	쌀	의미, 현미 포함
4012	잡 쌀	
4013	보 리 쌀	쌀보리, 늘보리 포함
4014	밀	
4015	콩	
4016	팥	
4017	누 두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018	좁 쌀	
4019	수 수 쌀	
4021	밀 가 루	
4022	기 타 곡 물	압떡, 옥수수, 망콩, 모밀 등 위에 분류 되지 않은 곡물류
4100	육 어 개	
4111	쇠 고 기	
4112	돼 지 고 기	
4113	닭 고 기	
4114	기 타 육 류	오리, 토끼, 염소, 고래, 비둘기, 개고기, 각종육류, 내장, 뼈 등 이 밖의 수조육 및 가공비 일체
4115	갈 치	
4116	생 명 태	
4117	조 기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118	전 경 이	
4119	고 등 어	
4121	물 오징 어	
4122	공 치	
4123	가 자 미	
4124	병 어	
4125	계	
4126	굴	
4127	조 개 류	
4128	기 타 선 어 개 류	해삼, 홍합, 전복, 미꾸라지, 대구, 문어, 잉어, 도미, 민어, 새우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선어개류
4129	복 어	
4131	굴 비	
4132	마 른 멸 치	
4133	마 른 오징 어	
4134	새 우 젓	
4135	멸 치 젓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136	기 타 전 어 개 류	전대구, 전홍합, 전새우, 전갈치, 조개 오징어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전어개류
4200	유 란	
4211	달 갈	
4212	분 유	
4213	연 유	
4214	목 장 우 유	
4215	버 터	
4216	기 타 유 란 유	오리알, 제란가루, 치즈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유란유 일체
4300	채 소 및 해 초	
4311	배 추	
4312	양 배 추	
4313	파	
4314	시 금 치	
4315	상 치	
4316	콩 나 물	
4317	기 타	부추, 미나리, 고사리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잎줄기채소 일체
4318	잎 줄 기 채 소 무	열무, 청각무 포함
4319	당 근	
4321	양 파	
4322	도 라 지	
4323	고 구 마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324	감 자	
4325	기타뿌리채소	
4326	꽃 고 추	
4327	오 이	
4328	호 박	
4329	도 마 도	
4331	가 지	
4332	기타열매채소	
4333	김	
4334	미 역	
4335	다 시 마	
4336	기 타 해 초	
4400	과 일	
4411	사 과	
4412	배	
4413	복 승 아	
4414	포 도	
4415	밤	
4416	감	
4417	꽃 감	
4418	밀 감	
4419	바 나	
4421	참 의	
4422	수 박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423	달 기	
4424	기 타 과 일	잣, 대추, 살구, 자두 등
4500	조 미 료	
4511	고 추	
4512	고 추 가 루	
4513	후 추 가 루	
4514	마 늘	
4515	생 강	
4516	개	
4517	기 타	
4518	향신 조미료	
4519	소 금	
4521	간 장	
4522	고 추 장	
4523	식 초	
4524	설탕 탕	
4525	구 루 타 민 산	미원, 미풍 등의 화학조미료
4526	소 다	
4527	기 타 장 류	된장, 메주, 꿀, 조청, 옛기름 등
4528	들 기 름	
4529	참 기 름	
4530	콩 기 름	
4531	낙 화 생 기 름	
4532	마 가 름	
4533	기 타 식 유	면실유, 돼지기름, 생선기름 등의 식유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600	가 공 식 품	
4611	국 수	
4612	라 면	
4613	당 면	
4614	생선 통조림	
4615	육류 통조림	
4616	과일 통조림	
4617	두 부	
4618	단 무 지	김치 포함
4619	소 세 지	
4621	기타가공식품	베이콘, 유부, 램, 가마복구, 생선묵, 튀김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가공식품
4700	과자 및 청 량 음	
4711	식 빵	
4712	빵	
4713	생 과 자	
4714	비 스 켓	
4715	크 레 카	
4716	기 타 과 자 류	전빵, 샌베이, 카스텔라, 카라멜 등
4717	떡	
4718	기타한식과자	약과, 산자 등
4719	초 쿨 뱃	
4721	엿	
4722	걸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723	기타설탕과자	
4724	콜 라	
4725	사 이 다	
4726	쥬 스	
4727	커 피	
4728	홍 차	
4729	코 코 아	
4731	아 이 스 크 린	
4732	얼 음	
4733	기타청량음료	밀크, 아이스캔디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청량음료
4800	알 콜 음 료	
4811	청 주	
4812	약 주	
4813	탁 주	
4814	소 주	
4815	맥 주	병맥주, 캔맥주 포함
4816	포 도 주	
4817	위 스 키	
4818	기 타	백알, 교량주, 매실주, 과일주 포함
4900	의 식	
4911	곰 탕	
4912	냉 면	
4913	비빔 밥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914	기 타 한 식	위에 분류되지 않은 한식 일체
4915	짜 장 면	
4916	우 동	
4917	기타 중국식	위에 분류되지 않은 중국음식 일체
4918	초 밥	
4919	기 타 왜 식	초밥 이외의 일본요리 일체
4921	양 식	양식 일체
5000	주 거 비	
5100	방 세	
5200	자 가 평 가 액	소득란의 자가평가액 (3300) 을 참고로 할것.
5300	수 도 료	우물 사용료 포함
5400	주 택 수 리	
5411	목 재	
5412	합 판	
5413	유 리	
5414	시 멘 트	
5415	벽 돌	시멘벽돌 포함
5416	부 록 크	
5417	기 와	
5418	합 석	
5419	스 레 이 트	
5421	패 인 트	니스, 락카 포함
5422	한 지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5423	비닐장판	
5424	주택수리임	
5425	기 타	
5500	가구 및 집기	
5511	양복장	카비넷트 포함
5512	찬장	
5513	거울	
5514	밥상	
5515	책상	테이블 포함
5516	의자	
5517	용접셀	
5518	침대	
5519	탁상용시계	
5521	벽시계	
5522	재봉틀	
5523	피아노	
5524	석유난로	
5525	연탄난로	
5526	라디오	
5527	텔레비전	
5528	건축	
5529	녹음기	
5531	선동기	
5532	냉장고	
5533	믹서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5534	전 화 기	
5535	다 리 미	
5536	곤 로	
5537	전 구	
5538	형 팜 등	
5539	기 타 가 구	자전거, 풍금, 전기스탠드, 유모차, 신장 등
5541	양 은 솔	
5542	냄 비	
5543	스테인레스 주 발	
5544	사 기 주 발	
5545	접 시	
5546	찜	
5547	커 피 셸	
5548	주 전 자	
5549	수 처	
5551	바 켓	
5552	후 라 이 팬	
5553	식 칼	
5554	항 아 리	
5555	프 라 스틱 집 기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5556	기 타 집 기	도시락, 가위, 호스, 연탄용집게, 이밖의 부 속용품 및 잡용품
6000	광 열 비	
6100	전 기 료	
6200	연 료 비	
6211	연 탄	
6212	숯	
6213	깨 스	
6214	유 류	
6215	기 타 연 료	석탄, 코크스, 조개탄, 장작, 톱밥 등
6300	기 타 광 열	
6311	성 낭	
6312	양 초	
6313	기 타	이상에서 분류되지 않은 광열비 일체
7000	피 복 비	
7100	의 복	
7111	신 사 복	
7112	숙 녀 복	
7113	코 트	
7114	오 바	
7115	한 복	

부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7116	학 생 복	
7117	아 동 복	
7118	잠 바	
7119	와 이 셔 어 츠	
7121	남 방 셔 어 츠	
7122	내 의	
7123	번 닝 셔 어 츠	
7124	스 웨 터	
7125	브 라 우 스	
7126	스 커 트	
7127	바 지 (기 성 복)	
7128	브 라 자	
7129	세 탁 료	
7131	기 타	이상에서 분류되지 않은 의복류 일체
7200	지 물 면 및 사	
7211	광 목	
7212	포 프 린	
7213	용	
7214	나 이 통	
7215	기 타 지 물	위에 분류되지 않은 지물류 일체
7216	습	
7217	실	
7300	양 말 류	
7311	양 말	

부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7312	스 타 킹	
7313	버 셴	
7314	기 타 양 말	
7400	신 발 류	
7411	남 자 구 두	
7412	여 자 구 두	
7413	고 무 신	
7414	운 동 화	
7415	비 신	
7416	비 날 화	
7417	기 타 신 발	무용화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신발류 일체
7500	장 신 구	
7511	핸 드 백	
7512	반 지	
7513	손 목 시 계	
7514	안 경	
7515	백 타 이	
7516	장 갑	
7517	마 후 라	
7518	모 자	
7519	기 타 장 신 구	술, 허리띠, 스카프, 지갑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장신구 일체
7600	기 타 피 복	
7611	이 불	

부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7612	모 포	
7613	가 방	
7614	수 전	
7615	우 산	
7616	양 산	
7617	재 료	
7618	기 타	숨재생산, 상기서비스로의 외부서비스로 등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외부비 일체
8000	잡 비	
8100	의 료	
8111	감 기 약	
8112	소 화 제	
8113	영 양 제	
8114	항 생 제	
8115	해 독 강 장 제	
8116	구 충 제	
8117	외 상 약	
8118	기 타 의 약 품	안과용제, 탈지면 등
8119	진 료 대	진찰료, 왕진료, 주사로, 투약료, 수술료 등
8121	입 원 료	입원환자의 진료비 일체
8122	분 만 료	
8123	조 선 활 영 료	
8124	기 타 의 료	위에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일체
8200	미 용 위 생	
8211	화 장 비 누	

부호	항 목 별	내 용
8212	화 장 크 립	
8213	화 장 분	
8214	화 장 수	
8215	치 약	
8216	치 술	
8217	세 탁 비 누	
8218	포 마 드	
8219	살 충 제	
8221	면 도 용 기	
8222	화 장 지	
8223	기 타 미 용 품	
	위 생 용 품	
8224	이 용 료	
8225	미 용 료	파마료, 고대료 포함
8226	목 욱 료	
8227	구 두 닦 기	
8228	청 소 료	오물 및 분뇨수거비 (동회에 납부하는 오물세 제외)
8229	기 타 미 생 용 위	
8300	문 방 구	
8311	만 년 필	
8312	연 필	
8313	불 펜	
8314	노 트	
8315	필 기 용 지	
8316	도 화 지	

부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8317	그 립 물 감	위에 분류되지 않은 학용품 및 사무용품 일체
8318	기 타 문 방 구	
8400	교 육 비	
8411	유 치 원	
8412	국 민 학 교	
8413	중 학 교	
8414	고 등 학 교	
8415	대 학 교	
8416	교 과 서 대	
8417	학 원 비	
8418	기 타	참고서대, 가정교사로, 도서관비 등
8500	교 양 오 략	
8511	신 문	
8512	주 간 지	
8513	월 간 지	
8514	도 서	
8515	극 장 입 장 료	
8516	스 포 츠 관 략 료	
8517	기 타 입 장 료	
8518	카 메 라	구입비에 한함
8519	필 림	
8521	사 진	현상, 인화, 확대 포함
8522	레 코 드	
8523	운 동 기 구	

부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8524	완 구	낚시용품, 악기, 등산용품, 완구 등	
8525	기 타		
8600	교 통 통 신		
8611	항 공 로		
8612	매 스 로		고속매스로 포함
8613	택 시 로		
8614	기 차 로		
8615	선 박 로		
8616	기 타 교 통 비		
8617	전 화 로		
8618	전 신 로		
8619	우 편 로		엽서로, 소포로, 편지로 포함
8621	기 타 통 신 로		
8700	담 배		교회, 사찰, 절인, 등에 지출 증여되는 금액 단, 타가주에로 이전되는 금액은 제외되 어야 한다.
8800	기 타 잡 비		
8811	증 여 금		
8812	식 모 임		
8813	수 수 로		
8814	기 타		
9000	비 소 비 지 출		
9100	조 세	근로소득세, 가유세, 상속세 등의 조세와 야 경비, 전세금, 자회비, 동상회비 등의 조세와 야 조사기 및, 담, 사업상 회비, 우토, 지출되는 가 조세 및, 양, 과금은 제외되는 것 이다.	
9200	이 자	가계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9300	기 타	벌금, 파로, 변상금, 도난, 분실금품등을 조 사 기입한다.	
9999	자가생산물지출총액		

< 부록 2 >

직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 (소분류)
전문적· 기술적 직업종사 자	건축기사· 측량기사 및 기술자	근 (봉)	건축기사 측량기사 토목기사 전기 및 전기통신기술자 기계기술자 채광기술자 화학야금기술자 농림기술자 수산기술자 요업기술자 식품기술자 방직기술자 타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 기 사, 측량기사 및 기술자
	자연과학자	근 (봉)	화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농림학자 수산학자 타에 분류하지 않은 자연 과학자
	의사	근 (봉)	의사 치과의사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단, 개인 의사의 경우 는(의)가구	수외사 한외사
	간호원 및 조산원	근(봉) 의	간호원 조산원
	기타의 전문 적 의료 종 사자 및 의료기술자	근(봉) 단, 자기의 전문기술로 개업 하고 있을 때에는 (의)가구	약사 의료기술자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문적 의료종사자 및 의료기술자
	교원	근 (봉)	대학교교원 중·고등학교교원 국민학교교원 유치원교원 타에 분류되지 않은 학교 교원
	종교성직자 사법관계 종사자	의 근(봉) 단, 변호사는 (의)가구	종교성직자 사법관계종사자
	예술가·저작	의	화가 및 조각가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자 및 유사 종사자	단, 기자는 군 (봉)	음악가 무용가 배우 및 연예인 작가, 평론가 및 언론인 (기자) 타에 분류되지 않은 예술가 및 저작가
	기타의 전문 적 기술적 직업 종사자	의 단, 도서 취 급 및 보관 인, 인문과학 자 고용된 제도사는 군(봉)	제도사 제리사 사회사업가 도서취급 및 보관인 인문과학자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 직업종사자
관 리 직 업 종 사 자	관리직 공무 원	군 (봉) 단, 장, 차관, 도지사급 이 상의 관리직 공무원은(의) 가구로 함.	관리직 중앙공무원 (3급 이상) 관리직 지방공무원 (2급 이상)
	사회단체의 상임직원및 개인업체의 경영주 기타	의 군 (봉)	사회단체의 상임직원, 개인기 업체의 경영주 기타의 관리직 직업종사자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사무종사자	외사 관리직 직업종사자		
	사무종사자	근 (봉)	회계 및 현금출납원 일반사무원 수금인 우체사무종사원 속기사 및 타자원
	기타의 사무종사자	근 (봉)	사무용 기계조종사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무
판매종사자	상품 판매 종사자	의 단, 판매원, 점원 및 상 업의무원은 근 (노)	도매업 경영주 소매업 경영주 음식점주 판매원 및 점원 행상인 및 노점상인 상업의무원(보험을 제외) 타에 분리되지 않은 상품 판매종사자
	외무원·부동산중개인 및 유가증권의 매매인	의 단, 보험의무 원은 근 (봉)	정액 봉급이 없이 수수료를 받는 일체의 외무원 또는 중개인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기타의 판매종사자 교통체신 업종사자	철도기관사 및 화부	외 근 (노)	기타의 판매종사자 철도기관사 화부
	자 동 차 운 전 사	근 (노)	전차운전사 버스운전사 승용자동차운전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타에 분류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사
	선박, 항공 기 운전조 종사	근 (봉)	선장, 갑판장 및 항해사, 선박기관사, 조종사, 항공사 및 항공기관사
	전화교환원 및 전보 통 신원	근 (봉)	전화교환원 전보통신원 집배원 송달부
	기타의 교 통 및 체신 업 종사자	근 (노)	감판부원, 기관원 및 선원, 기차차장 및 검사원, 기타 차량의 차장, 교통정비원, 배 차원 및 발신호원, 통신검사 원 및 정리원, 우마차부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교통 체신업 종사자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기타 단 순노무자	방직공, 직 조공, 편물 공, 염색공 및 유사직 공	근 (노)	섬유준비공 방직공 및 권사공, 직조공, 방지기설치수리공 및 방지기 준비공 편물공 및 편물기설치수리공, 직물조문판 제작공, 직물표백 공, 염색공 및 완성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직물 및 유 사제품제조공
	재봉사, 재 단사, 모피제 품제조공 및 유사직공	근 (노)	양복재봉사 한복재봉사 모피, 피혁, 의류, 재봉사 및 유사직공 모자제조공
	피혁제품제 조공(장갑 및 의류제품 제외)	근 (노)	직물, 피혁의류, 장갑의 지형 공 및 재단사, 직물, 모피물, 피혁의류 및 장갑의 자수공 직물가구공 및 유사직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의류 및 유사제품 제조공 제화공 화류수선공 가족맥제조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금속재료 제조공	근 (노)	용광로공(금속제품) 비철금속제련공 주물공 하조공 금속열처리공 압연공 신선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재료제조공
	정밀기계제조공, 시계제조공, 보석공 및 유사직공	근 (노)	정밀기계제조공 및 수리공 시계제조공 및 수리공 보석공, 금세공 및 은세공 보석류조각공 기계완성공, 공구제조공 및 기계공구정비공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기타 단 순노무자	금속기계제품 제조공 및 유사직공	근 (노)	기계공구제작공 조립공 및 기계설치공 (전기 및 정밀기계조립공 제외) 기계수리공(전기 및 정밀기계수리공 제외) 금속박판공 연관공 및 관류결합공, 용접공, 철판공 및 철근공, 도금공 및 유사직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 제품제조공
	전기공, 전력 및 전자력 이용공	근 (노)	전기공, 전기수리공 및 유사 직공, 전기 및 전자기구공, 라디오, 텔레비전설비공 및 수리공, 전신전화기가설공 및 수리공, 전선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 전자 및 유사직공
	목공, 가구공 및 기타 목· 축제품 제조 공	근 (노)	목 공 가구공 세제품, 제재기설치공, 축제품 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목· 축제품 제조공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기 타 단순노무자	도장공 및 표구공 토목(미장이) 및 기타 전 축종사자	근 (노) 근 (노)	건축도장공 표구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도장공 도공(미장이) 연화적공, 개와공 및 타일공, 시멘트 완성공 및 테라조공 철연취굽공 유리삽입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관계직공
	인쇄공, 제본공 및 유사직공	근(노)	식자공, 인쇄공, 제판공, 등사공, 제본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인쇄제본 관계직공
	도기공, 도공, 유리 및 점토성형공 및 유사직공	근(노)	유리성형공, 절단공, 연마공 및 완성공 도기공, 점토성형공 유리 및 도기노공 유리 및 도기장식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유리 및 절업관계직공 도정공 및 제본공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기타 단 순노무자	음식료품 가공 및 제조공	근(노)	제빵공 및 제과공 제당 및 정당공 주류제조공 및 유사직공 저장공, 냉동공 및 통조림 제조공 및 정육공 낙농품 제조공 원장, 간장 및 기타 조미료 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음식료품 가공공 및 제조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 (소분류)
	화학 및 화학공정 종사자	근 (노)	단식 및 연식증유 부관리부 화학제품 가열공 화학제품 원료분쇄가공공, 팔프공 및 제지공, 화학제품 제조공 동식물 유지공, 경화유공 및 비누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화학 및 화학공정 종사자
	연초가공공 및 연초제품 제조공	근 (노)	연초 가공공, 연초제품 제조 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연초제 품 제조공 제용공 및 유사직공, 타이야 제조공 및 고무제품 제조공 화선공 및 유사직공
	기타기능공 및 생산품 제조공	근 (노)	제혁가공공, 모피공 및 유사 직공, 사진암실 종사자 악기 제조공 및 유사직공, 조각공 및 석공 지류제품 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기능공 및 생산제품제조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포장공, 하역 작업자 및 유 사직업종사자	근 (노)	포장공 및 유사직공 하역작업자 및 유사직업 종사자
	고정기관 굴 착기, 기중기 운전공 및 유사직업 종 사자	근 (노)	고정기관 및 유사장치운전공 및 기관화부 기중기 운전공 화차설치공 및 접선공 건설중기 운전공 소운반기계운전공(물품처리) 주유부(고정기관, 자동차 및 기타시설)
	기타의 단순 노무자	근 (노)	도로 보수공 보선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단순 노무자
서비스직 업종사자	보안서비스 종사자	근 (봉) 단. 수위, 감시원은 근 (노)	소방관 및 유사직업 종사자 경찰관 해양경비원
	가사서비스 종사자	근 (노)	수위 및 감시원 타에 분류되지 않은 보안 서비스종사자 가사부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가정 사용인
	기타 서비스 종사자	근(노) 단, 체육가, 운동가 및 유사직업종사 자는(외)	요리인(개인가정 제외) 여관, 하숙 및 기숙사의 종사자, 배달부, 접대부 및 사환(개 인가정 제외) 이발사 및 미용사 목욕탕 종사자 구두닦이 사진사 및 영사기사 세탁직 청소부 및 유사직업종사자 체육가, 운동가 및 유사직업 종사자 안내인 장의사 및 화장장종사자 접객부 및 기생 타에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 종사자
	군인	군(봉)	육군사병 육군장교 해군사병 해군장교 공군사병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분류불능외 직업	새로이 직업을 구하는 자 (무직)	외	공군장교 해병대사병 해병대장교 새로이 직업을 구하는 자 (무직)